

(앞쪽)

제 호

인삼류조사공무원증

사 진

3cm × 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
기 관 명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인삼류조사공무원증

소 속:

직위/직명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의 사람은 「인삼산업법」 제15조제4항
· 제17조의4제3항 · 제19조제5항 및 제29
조제2항에 따른 인삼류조사공무원임을 증
명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장

직인

1. 인삼류조사공무원이 인삼류에 대한 조사 또는 압류 등을 하는 때에는 항상 증을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